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14호 2021. 8. 5.(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992호)
-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1-996호)
-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 공고 제2021-99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 개정이유

운전원(청소차운행자)은 업무 특성상 일직 대체휴무 사용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바 운전원을 일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일직 당직반원을 1명 충원하여 운전업무수행과 당직근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당직근무자의 편성 개정(안 제6조제2항 별표1)

-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직 운전원 삭제
-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일직)반원
 - 일직 당직반원 1명 ⇒ 1명~2명 개정

3. 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의견제출 사항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라. 제출할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 전화 : 054-650-6832, 팩스 : 054-650-6089
- 전자우편(이메일) : kjy1907@korea.kr

[별표 1]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본 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읍면 (곤충연구소 제외)	곤충연구소	
		당직 사령	당직 반장	당직 반원	운전원	당직반원	당직반원	
평일	숙직	1명 (팀장)	1명	1명	1명 (재택)	1명 (재택)	1명 (재택)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직	1명 (5급)	1명 (팀장)	1~2명		1명	하절기	2명
							동절기	1명
	숙직	1명 (팀장)	1명	1명	1명 (재택)	1명 (재택)	하절기	2명(재택)
							동절기	1명(재택)

※ 하절기 : 4월 ~ 10월, 동절기 : 11월 ~ 익년 3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참 고

관계법령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5항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운전원(청소차운행자)은 업무 특성상 일직 대체휴무 사용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바 운전원을 일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일직 당직반원을 1명 충원하여 운전업무수행과 당직근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당직근무자의 편성 개정(안 제6조제2항 별표1)

-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직 운전원 삭제
-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일직)반원
 - 일직 당직반원 1명 ⇒ 1명~2명 개정

3. 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5항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마. 입법예고 : 7월 중 실시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규칙 제2021-992호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의 본청의 당직 반원란 “1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의 본청의 운전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당 직 근무자 편 성 기 준 (제6조 제2항 관련)

구 분		본 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읍면 (곤충연구소 제외)	곤충연구소	
		당 직 사령	당 직 반장	당 직 반원	운 전 원	당 직 반원	당 직 반원	
평 일	숙 직	1명 (팀장)	1명	1명	1명 (재택)	1명 (재택)	1명 (재택)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 직	1명 (5급)	1명 (팀장)	1~2명		1명	하절기	2명
							동절기	1명
	숙 직	1명 (팀장)	1명	1명	1명 (재택)	1명 (재택)	하절기	2명(재택)
							동절기	1명(재택)

※ 하절기 : 4월 ~ 10월, 동절기 : 11월 ~ 익년 3월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부대 직제 조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인용 조문 삭제(안 제1조)

○ 「통합방위법」 제17조 삭제

나.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항토예비군” 을 “지역예비군” 으로 변경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정비 및 위원 추가(안 제3조)

조례 조문	현 행	개 정
제3조제2항제1호	군의회 의장	예천군의회 의장
제3조제2항제2호	경찰서장	예천경찰서장
제3조제2항제3호	교육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3조제2항제4호	육군 부대장	육군제3260부대2대대장
제3조제2항제5호	국가정보원 관계자	국가정보원 예천담당관
제3조제2항제6호	지방소방관서의 장	예천소방서장
제3조제2항제7호	지역재향군인회장	재향군인회예천지부장
제3조제2항제8호	보훈지청장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제3조제2항제9호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제3조제3항제2호	작전장교	작전과장
제3조제3항제3호	동원장교	동원과장

라.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명칭 변경(안 제6조)

○ “건설·수송·장비지원반” 을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으
로 변경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의견제출 사항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라. 제출할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 전화 : 054-650-6153, 팩스 : 054-650-6159
- 전자우편(이메일) : rhwocjd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통합방위법】**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 ③ (생 략)**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 ② (생 략)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

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 ⑧ (생 략)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③·④ (생 략)

예천군 공고 제2021 - 997호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예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군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범 군민 클린예천 실천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클린예천을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영농환경심사제”란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등 평가지역에 대한 관리 상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함
- “평가지역”이란 평가 대상자가 농·축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을 말함
- “평가대상”이란 평가지역과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적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함

나. 적용 범위(안 제4조)

- 예천군 전역의 마을 어귀, 도로변, 임도, 경작지 주변 및 해당 지역 주민

다. 군민 참여 및 지원(안 제7조)

- 클린예천 실천운동에 참여하는 군민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물품, 홍보물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라. 처리수수료 감면(안 제8조)

- 읍·면장의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매립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

마. 영농환경평가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9조 ~ 제15조)

- 구성인원 : 읍면별로 10명 이내(당연직 및 위촉직)
- 기 능 : 영농환경심사,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 환경 지도자 추천 등

※ 영농, 축산 등 군 보조금 지원 시 영농환경심사 결과 반영 가능

- 위원임기 : 위촉직 2년, 당연직(공무원) 재직기간
- 회 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실비지급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여비, 수당 등 지급 가능(공무원 제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4일까지 예천군수(참고 :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전화054-650-6974, Fax054-650-6189, E-mail kdt110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클린예천 실천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클린예천을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린예천”이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예천군의 이미지를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영농환경심사제”란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등 평가지역에 대한 관리 상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지역”이란 평가 대상자가 농·축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가. 영농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 나. 축사 또는 작업장과 그 주변지역
 - 다.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4. “평가대상”이란 평가지역과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적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가. 각종 농업, 축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 나. 폐비닐, 보온덮개, 차양막 등 농사용 자재
 - 다. 축사, 작업장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자재
 - 라. 그 밖에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제3조(적용 범위) 클린예천 만들기는 군 전역의 마을 어귀, 도로변, 임도, 경작지 주변(배수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며, 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민은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농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실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실행계획 및 실천운동

제5조(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클린예천 조성을 위한 청결활동 전개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의 평가지역에 같은 조 제4호의 평가대상을 무단투기, 적치, 소각하지 않도록 홍보·계도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관하여 군민 교육 및 농·축산업인 지도, 분리배출 등 홍보를 실시한다.

제6조(실천운동 전개) ① 군수는 실행계획에 따라 클린예천 만들기 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이라 한다)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클린예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1. 청결활동 참여 및 홍보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실천

3.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폐기물, 물품 등 무단투기·적치·소각 금지
4. 거주지, 공장, 근무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

제7조(실천운동 전개 지원) 군수는 군민들이 제6조에 따른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리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경작지 주변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처리 수수료를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영농환경평가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클린예천 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읍·면별 영농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읍·면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촉직 :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은 읍·면 주민

2. 당연직 : 읍·면 팀장, 업무 담당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인 위원 중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읍·면 지역 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사한다.

1.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환경심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지도자 추천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군수는 각종 영농, 축산 등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사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기 중인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협의체 지원

제16조(협의체 구성) 군수는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를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행·재정적 지원) 제17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의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행정조치) 군수는 제6조제2항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예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일시적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단,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9. 9. 19.>

⑥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 9. 19.>

1. 제4조제1항의 종량제봉투 수수료는 별표 8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일시적 다량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일시적 다량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제12조 관련)

구 분		적 용 폐 기 물	처리비(톤당)
일시적 다 량 폐기물	가 연 성 혼합폐기물	폐목재류,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종이류, 페스티로폼, 암면 등과 같이 소각이 가능한 혼합폐기물	32,500원
및 공사장 생 활 폐기물	불 연 성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과 같은 건설폐재류	17,500원

4.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5.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19. 9. 19.>

3.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9. 9. 19.>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9. 9. 19.>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9. 19.>

【예천군 환경기본조례】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시박, 배스 등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2.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행사 참여 및 개최
 3.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계몽 활동
 4. 하천, 시가지, 도로변 등 국토대청결 활동
 5. 환경관련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6.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감시활동
 7. 기타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5.11.16.]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클린예천 실천운동 전개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홍보물 등 경비 지원(안 제7조)
- 협의체 운영 경비 지원(안 제1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클린예천 범군민운동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와 민간단체의 국토 대청결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장비, 물품, 홍보물 구입·제작비 10,000천원, 협의체 운영 경비 10,000천원, 합계 2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환경관리과 지방환경사무관 박종하(054-650-6180)